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 및 기술기준 제명을 개정하고, IPTV용 국내 제한수신 표준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제명을 변경함
- 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을 「전기통신기본법」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1조)
- 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전기통신설비」라는 용어를 「방송통신설비」로 변경함.(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 라. 제3조(정의) 제2항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추가함(안 제3조)
- 마. 제18조(제한수신)은 한국정보통신협회의 “IPTV용 교환가능한 CAS(iCAS)(TTAK.KO-08.0023)”을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8조)
- 바. 부칙 제2조(적용 예)를 신설하고, 현행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부칙 제3조(경과조치)로 변경하여 기술기준 제11조(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 조항의 적용을 유예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나.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별첨)

● 전파연구소고시 제2010- 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8-47, 2008.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월 일

전파연구소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술기준 제명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의 “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을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의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을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제18조 “①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분리 또는 교환과 상호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② 제한수신 모듈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제공 한다.”를 “①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 또는 교환되어야 하고 상호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수신 모듈의 분리 또는 교환과 상호호환에 대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TTAK.KO-08.0023)” 표준을 따른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예)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제조, 판매, 수입되는 단말장치는 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1조(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IPTV 기술기준 개정(안) 신규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u>전기통신설비</u>에 관한 기술기준</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및 「<u>전기통신기본법</u>」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u>전기통신설비</u>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생략</p> <p>제3조(정의) ① 생략 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방송법」, 「<u>전기통신기본법</u>」 및 「<u>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u>」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u>방송통신설비</u>에 관한 기술기준</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및 「<u>방송통신발전기본법</u>」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u>방송통신설비</u>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동일</p> <p>제3조(정의)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방송법」, 「<u>방송통신발전기본법</u>」, 「<u>전기통신사업법</u>」 및 「<u>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u>」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현 행	개정(안)
<p>제4조(전원설비) 핵심설비 등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에는 상용전원설비와 상용전원의 정전 등 이상 발생시에 대비한 예비전원설비의 설치는 「<u>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u>」 제10조를 준용한다.</p>	<p>제4조(전원설비) 핵심설비 등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에는 상용전원설비와 상용전원의 정전 등 이상 발생시에 대비한 예비전원설비의 설치는 「<u>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u>」 제10조를 준용한다.</p>
<p>제5조(보호기 및 접지) 과전압·과전류 및 낙뢰 등 전기적 이상으로부터 이용자·운용자 및 설비 보호를 위한 보호기 및 접지설비의 설치는 「<u>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u>」 제7조를 준용한다.</p>	<p>제5조(보호기 및 접지) 과전압·과전류 및 낙뢰 등 전기적 이상으로부터 이용자·운용자 및 설비 보호를 위한 보호기 및 접지설비의 설치는 「<u>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u>」 제7조를 준용한다.</p>
<p>제6조 ~ 제17조 (생략)</p>	<p>제6조 ~ 제17조 (현행과 동일)</p>
<p>제18조(제한수신) ①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u>분리 또는 교환과 상호호환이 가능해야 한다.</u></p> <p>② <u>제한수신 모듈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제공한다.</u></p>	<p>제18조(제한수신) ①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u>와 분리 또는 교환되어야 하고 상호호환이</u> 가능해야 한다.</p> <p>② <u>제1항에 따른 제한수신 모듈의 분리 또는 교환과 상호호환에 대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u></p>

현 행	개정(안)
<p>제19조(콘텐츠 보안)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신설></p> <p>제2조(경과조치) 제11조(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와 제18조(제한수신)는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회의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TTAK.KO-08.0023)” 표준을 따른다.</u></p> <p>제19조(콘텐츠 보안)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적용 예)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제조, 판매, 수입되는 단말 장치는 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u></p> <p><u>제3조(경과조치) 제11조(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u></p>